

안 내 문

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42호(2016.12.22.)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”가 개정함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1. 월한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17.1.1.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1,252,000	1,103,400	1,043,700	985,200	843,200

2. 수급자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(원) 비율에 따른 비교

구분	비율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017.1~	15%	187,800	165,510	156,550	147,780	126,480
	7.5%	93,900	82,750	78,270	73,890	63,240
~2016.12	15%	179,530	158,140	147,160	138,250	117,610
	7.5%	89,760	79,070	73,580	69,120	58,800
증 액		4,140	3,680	4,690	4,770	4,440

주) 등급별 월한도금액내에서 급여제공 시간 및 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.

3.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, 경감대상자	7.5%

항상 엘림재가센터에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2017. 1. 2.

엘림재가센터장